

## 능주.도곡면 행정구역 변경 결정안

### 심 사 보 고

#### 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3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3. 10. 13

다. 상 정 일 자 : 2003. 10. 10

(제117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)

#### 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총무과장 조 규 문

나. 제안사유

- '97 금전지구구획정리사업 실시결과 도곡면 대곡리, 신덕리와 능주면 남정리 토지 일부가 소유지는 동일하나 한필지의 토지가 능주면과 도곡면으로 양분되어 각종 행정상의 절차 이행시 주민불편 등 애로사항이 있음.

다. 주요내용

- 능주면 남정리 1107번지의 51필지 45,816.7m<sup>2</sup>를 도곡면으로 편입하고, 도곡면 대곡리 188-2번지, 신덕리 134-1번지 등 78필지 77,170.5m<sup>2</sup>를 능주면으로 편입조정

구 분	대 상 지 역		면 적
	편입되는 지역	편입받는 지역	
읍면간조정	능주면 남정리 (51필지 45,816.7m <sup>2</sup> )	도곡면 신덕리 대곡리	7필지 5,439.9m <sup>2</sup> 44필지 40,376.8m <sup>2</sup>
	도곡면 대곡리 (54필지 37,872.1m <sup>2</sup> ) 신덕리 (24필지 39,298.4m <sup>2</sup> )	능주면 남정리	78필지 77,170.5m <sup>2</sup>

#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장현범)

-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조3항에 규정된 면의 구역을 변경하는 조례로서 구역변경의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,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구하기 위

한 안건입니다. 법령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4. 결의 담변 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능주.도곡면 행정구역 변경결정안